

학교법인 호서학원 사무직원재심위원회규정

제정 2008년 2월 21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호서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정관 제68조에 따라 사무직원재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법인 이사
2. 각 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교직원
3.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자
4.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하는 교원

③교육기관의 당연직 재심위원을 제외한 법인 이사 위원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인이사 위원: 이사 임기 만료까지(중임시 연임)
2. 위촉위원 : 교체시 까지

제3조(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
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 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4조(심사) ①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 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신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5조(심사의 범위) 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.

제6조(청구인의 진술권) ①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②청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재심의 결정) ①재심사건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.

1.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
2.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련 있는 사항

제8조(결정서의 작성·송부) ①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표시
2. 결정주문
3. 결정의 이유
4. 증거의 판단

②재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재심결정의 효력) 제7조에 의한 재심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.

제10조(위원의 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(2008. 2. 2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11년 8월 23일에 선임된 위원들에 한해서는 임기를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(2018년 4월 26일)로부터 시행하며, 공포 이전에 선임한 재심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것으로 한다.